

인천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가단2758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완

변 론 종 결 2023. 5. 10.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9,092,5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A에 대한 채권

1) 참가인은 2020. 8. 21. A, E와 사이에 보증원금 76,500,000원, 보증기한 2021. 8. 20.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 E는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2020. 8. 2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A, E는 참가인이 A, E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참가인에게 위 보증채무 이행금 및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하는 비율(2019. 4. 1. 이후 연 8%)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참가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A의 재산 처분 등

1) A은 채무초과상태이던 2020. 6. 4. 동생인 F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6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6. 19. 접수 제717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140,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과 ②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자 (주)G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F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20. 6. 19.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3) F는 2021. 3. 24. 사망하였고, F의 부모인 피고들이 F를 상속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참가인의 대위변제

- 1) A에 대하여 2020. 12. 23.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참가인은 2021. 4. 1. 중소기업은행에 78,134,164원(원금 76,500,000원 + 이자 1,634,1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2) 참가인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50,859원을 지출하였다.

라. A에 대한 파산선고 및 원고의 소송수계 등

- 1) 참가인은 2022. 1. 3. A과 F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F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F의 상속인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다.
- 2)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7. 12. 인천지방법원 2022하단62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3)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이 사건 소를 민법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기한 부인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채무초과 상태였던 A이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고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의해 효력이 부인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수익자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342,000,000원에서 이 사건 매매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193,345,028원을 공제한 148,654,972원 중 참가인의 채권 범위 내인 78,185,0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F는 결혼 준비를 위해 시세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나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수익자에 해당하는 F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부인 대상 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 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등 참조).

나. 부인 대상 행위의 성립 여부

1) 갑 10, 1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의 적극재산은 26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가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102,276,122원, ② 주식회사 G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91,068,906원, ③ H에 대한 대출채무 11,146,000원, ④ I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무 7,755,000원, ⑤ J에 대한 대출채무 16,900,000원, ⑥ K에 대한 보증채무 57,867,000원 합계 287,013,02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동생인 F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참가인 등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

2) 피고들은,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인 2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매도금액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90,000,000원의 차액 중 6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가치가 임대보증금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과 F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F가 지급할 매매중도금으로 갈음하기로 특약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에 따르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다. 따라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삼는 특약을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결국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2) 피고들은 F가 누나인 A의 사업체 사정이나 개인적 채권채무관계를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외 가압류 등이 없어 A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며, 결혼을 염두에 둔 F가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시세대로 매수한 것인 점을 들어 F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F와 A의 인적관계, F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20. 6. 8. 새로 마련한 거주지로 이전한 것에 비추어 당시 F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점, A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가 해제되었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러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드는 위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F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당시 F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인권 행사의 효과

1)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참조).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과 달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을 직접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참조).

2) 판단

가)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8. 30. 채권최고액 140,4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 2018. 12. 10.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20. 6. 19.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그 가액에서 각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나아가 피고들이 가액배상 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소송은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이어서 그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반하여, 부인권 행사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즉시 소급하여 무효로 되어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으로 회복되고 부인소송은 단지 위와 같은 원상회복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목적물 가액의 산정시점은 부인권 행사의 효력발생일, 즉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부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2. 10.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2. 10. 24. 무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G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부인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날과 가까운 2021. 12. 2.경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45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02,276,122원, G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91,068,90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450,000,00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193,344,731원을 공제한 나머지 256,655,270원의 한도에서 참가인의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78,185,023원을 가액배상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각 39,092,511원(= 78,185,023원 × 1/2지분.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